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관련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변경 및 연장근거 마련
(안 제13조 제9항)
- 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재심의 사항 신설(안 제13조 제10항)
- 다. 중복되는 규정 삭제(안 제14조 제3·4·5항)
- 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이행강제금·과태료 개정사항 반영(별표 1, 6)
- 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별표 6의 제2호 나목)
- 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교체
(별지 제1·3·4·5·6·9·12·13·14·15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합 의 : 해당 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2. 9. 29.(목) ~ 10. 19.(수)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2) 비용추계 등 자료 : 해당 없음
-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예정 : 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4·5·6·9·12·13·14·1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5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5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9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면적 20㎡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30만원
- 0.5㎡ 이상 1㎡ 미만	35만원
- 1㎡ 이상 2㎡ 미만	40만원
- 2㎡ 이상 3㎡ 미만	48만원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55만원
- 3.5㎡ 이상 4㎡ 미만	65만원
- 4㎡ 이상 4.5㎡ 미만	80만원
- 4.5㎡ 이상 5㎡ 미만	95만원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110만원
- 6㎡ 이상 7㎡ 미만	130만원
- 7㎡ 이상 8㎡ 미만	150만원
- 8㎡ 이상 9㎡ 미만	170만원
- 9㎡ 이상 10㎡ 미만	190만원
4) 면적 10㎡	20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30만원
- 2㎡ 이상 3㎡ 미만	35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8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210만원
- 25㎡ 이상 30㎡ 미만	230만원
- 30㎡ 이상 35㎡ 미만	245만원
- 35㎡ 이상 40㎡ 미만	260만원
- 40㎡ 이상 45㎡ 미만	280만원
- 45㎡ 이상 50㎡ 미만	290만원

5)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3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60만원 80만원+ 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10만원

- 1㎡ 이상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29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35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다) 면적 5㎡	50만원
- 5㎡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 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 로 계산한다.
-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m^2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1m^2 초과 2m^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다) 면적 2m^2 초과 3m^2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3m^2 초과하는 면적 0.5m^2 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m^2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m^2 초과 5m^2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다) 면적 5m^2 초과 10m^2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10m^2 초과하는 면적 1m^2 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라) 30장 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 30일 이상 90일 미만		11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2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00만원		
4) 1년 이상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9만원	49만원	99만원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⑮ 변 경 사 항	⑮ 비 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외광고업자등록번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성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록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성 북 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직인
--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illegible]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성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⑧ (생략)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⑨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u><신 설></u>	<u>⑩ 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을 처리해야 한다.</u>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② (생략)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u>	<u><삭 제></u>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9만원
- 6.1㎡ 이상 7.0㎡ 이하	69만원
- 7.1㎡ 이상 8.0㎡ 이하	79만원
- 8.1㎡ 이상 9.0㎡ 이하	89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9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9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9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9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9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9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삭 제>

<삭 제>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5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5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9만원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9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9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9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9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9만원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9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9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9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9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4) 면적 20㎡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 500만원 이하
에드빌론		에드빌론	
1) 연면적 3㎡ 미만		1) 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5㎡ 미만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5만원	- 0.5㎡ 이상 1㎡ 미만	35만원
- 1.1㎡ 이상 2.0㎡ 이하	40만원	- 1㎡ 이상 2㎡ 미만	40만원
- 2.1㎡ 이상 3.0㎡ 미만	49만원	- 2㎡ 이상 3㎡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9만원	- 3㎡ 이상 3.5㎡ 미만	55만원
- 3.6㎡ 이상 4.0㎡ 이하	69만원	- 3.5㎡ 이상 4㎡ 미만	65만원
- 4.1㎡ 이상 4.5㎡ 이하	85만원	- 4㎡ 이상 4.5㎡ 미만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9만원	- 4.5㎡ 이상 5㎡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9만원	- 5㎡ 이상 6㎡ 미만	11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9만원	- 6㎡ 이상 7㎡ 미만	13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9만원	- 7㎡ 이상 8㎡ 미만	15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9만원	- 8㎡ 이상 9㎡ 미만	17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99만원	- 9㎡ 이상 1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4) 면적 10㎡	20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에드빌론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에드빌론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 5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 미만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5만원	- 2㎡ 이상 3㎡ 미만	35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 4㎡ 이상 5㎡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9만원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9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9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9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9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119만원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9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9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9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9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219만원	- 20㎡ 이상 25㎡ 미만	210만원
- 21.1㎡ 이상 30.0㎡ 이하	239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49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69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89만원	- 25㎡ 이상 30㎡ 미만	230만원
- 45.1㎡ 이상 50.0㎡ 미만	299만원	- 30㎡ 이상 35㎡ 미만	245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35㎡ 이상 40㎡ 미만	260만원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40㎡ 이상 45㎡ 미만	280만원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45㎡ 이상 50㎡ 미만	290만원
- 연면적 5㎡ 이하	40만원	5) 면적 50㎡	30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500만원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70만원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연면적 21㎡ 이상	8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1) 선전탑, 아치광고물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면적 5㎡ 미만	30만원
- 애드벌룬(공) 1개	4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 + 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 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면적 20㎡	75만원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연면적 5㎡ 이하	40만원	* 500만원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7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연면적 21㎡ 이상	8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 + 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2) 교통안내소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의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면적 5㎡ 미만	30만원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1) 비행선	20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 연면적 10㎡ 이하	250만원 + 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이하)	- 면적 20㎡	80만원
- 연면적 11㎡ 이상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교통수단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가) 연면적 3㎡ 미만	10만원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1.0㎡ 이하	20만원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1.1㎡ 이상 2.0㎡ 이하	29만원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의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2.1㎡ 이상 3.0㎡ 미만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39만원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3.0㎡ 이상 4.0㎡ 이하	49만원	1) 비행선	
- 4.1㎡ 이상 5.0㎡ 미만	50만원 + 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면적 10㎡ 미만	150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 면적 10㎡	16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10만원
		- 1㎡ 이상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29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35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다) 면적 5㎡	50만원
		- 5㎡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접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14만원
- 0.6㎡ 이상 0.8㎡ 이하		24만원
- 0.9㎡ 이상 1.0㎡ 미만		3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44만원
- 1.4㎡ 이상 1.6㎡ 이하		54만원
- 1.7㎡ 이상 2.0㎡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85만원
- 2.4㎡ 이상 2.6㎡ 이하		110만원
- 2.7㎡ 이상 3.0㎡ 미만		129만원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접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² 이하는 0.5㎡²로 0.5㎡ 초과 1.0㎡² 미만은 1.0㎡²로 계산한다.
 -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법 제20조			
(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제2항 제3호)	제1항 제1호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1) 입간판				
- 0.5㎡ 이하	10만원	가) 면적 1㎡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 0.6㎡ 이상 0.8㎡ 이하	12만원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 0.9㎡ 이상 1.0㎡ 미만	14만원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 1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 13만원을 더한 금액	
- 1.0㎡ 이상 1.3㎡ 이하	29만원					
- 1.4㎡ 이상 1.6㎡ 이하	39만원					
- 1.7㎡ 이상 2.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9만원					
- 2.4㎡ 이상 2.6㎡ 이하	69만원					
- 2.7㎡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현수막				
나.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가) 면적 3㎡ 미만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 1.0㎡ 이하	10만원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 2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 25만원을 더한 금액	
-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 2.1㎡ 이상 3.0㎡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24만원					
- 3.8㎡ 이상 4.4㎡ 이하	28만원					
- 4.5㎡ 이상 5.0㎡ 미만	34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9만원					
- 6.1㎡ 이상 8.0㎡ 이하	69만원					
- 8.1㎡ 이상 10.0㎡ 미만	79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 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 벽보				
		가)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라) 30장 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부과					
다. 벽보		4)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5천원	다)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 21장 이상	장당 4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30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40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의3			
1) 일반 광고내용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8천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7천원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 21장 이상	장당 3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용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초과인 경우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9만원	49만원	99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계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에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접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4. 작성자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이계웅